

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- 전문위원 지용옥입니다.
- 2004년 9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고,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, 9월 16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된,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- 먼저,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,
 - 교육재정 운용의 계획성·건전성 제고와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同심의위원회에 전문가 등 외부인사의 참여폭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.
- 주요 내용으로는,
 - 현행 규정상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10명과 위촉위원 5명, 모두 1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을,
 -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위원 11명 이내,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.

현 행		개 정 안	
위원수 : 15명	당연직 위원 : 10명 민간위촉위원 : 5명	위원수 : 15명 이내	당연직 위원 : 4명 민간위촉위원 : 11명 이내

□ 이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금번 제출된 “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”은 교육재정 운용의 계획성·건전성 제고와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전문가 등 외부인사의 참여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- 다만,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 총 15명 이내로서 당연직 위원 4명, 위촉위원 11인 이내로 구성되는 바,
 - 조례내용만으로 볼 때, 외부 위촉위원의 최소인원이 명시되지 않아, 외부인사의 참여폭을 확대하려는 조례개정의 취지와 맞지 않게 해석할 소지가 있으며,
 - 심의위원회 위원중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비율을 3분의 1 이내로 하도록 명시한 「교육비특별회계 재정투·융자사업 심사지침(교육인적자원부 교재 81440-755, 2002.12.30)」의 취지에도 부합하도록,
 - 민간위촉위원을 당연직위원을 포함한 전체위촉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□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